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옥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89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5월 27일

발 의 자: 김영옥, 강석주, 최호정
의원(3명)

찬 성 자: 김경훈, 김규남, 김영철,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박상혁,
박영한, 허·훈, 황유정
의원(15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'협의회')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, 그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협의회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도모하고자 함
- 아울러,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협의회의 회원에게 표창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, 모범적인 사례를 확산하고 그에 따른 사기증진 및 예우를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구체화 함(안 제4조제2항)
- 나. 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규정을 신설함 (안 제4조의2 신설)
- 다.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회원의 표창규정을 신설함 (안 제6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지원”을 “편성 성격 및 항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공유재산의 우선임대)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표창) 시장은 협의회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6조 (생 략)

회원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
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
다.

제7조 (현행 제6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분	관련 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4조(예산지원)	×	추가 비용수반 없음 ¹⁾
2	제4조의2(공유재산의 우선임대)	×	별도 비용수반 없음 ²⁾
3	제6조(표창)	△	표창 제작 소요금액 ³⁾ 발생할 수 있으나 소액이고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- 동 개정안 제6조(표창)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, 관련부서 확인결과 표창대상이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곤란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 담 당 관 오 희 선
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 추계분석관 손 제 승
 ☎ 02-2180-7954
 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1) 동 개정안 제4조(예산지원)는 현행 같은 조례 같은 조항의 '지원'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에도 지원을 명시하고 있기에 추가적 재정소요는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2) 임대료 증감에 영향은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3) 사업시행 시 연례반복적 소요비용으로 표창대상 수에 따라 향후 예산(사무관리비)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함
 - 다만 관련부서 확인결과 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합리적 비용추계가 곤란함